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3년 7월 6일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93년 7월 7일
- 라. 상정일자 : 93년 7월 21일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김 경 호)

가. 제안이유

-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특별운용관, 분입운용관 분입지출원를 변경하고자 함.
- 부천시직제규칙, 담당관 및 과규칙 개정 → “경영수익사업지도”업무가 세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로 변경됨.

나. 주요관자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관계공무원 변경
 - 기금특별운용관 : 재무국장 → 기획실장
 - 분 입 운 용 관 : 세정과장 → 기획담당관
 - 분 입 지 출 원 : 세외수입계장 → 예산계장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부천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녹지과, 양모사업과, 시민회관사용료 징수, 도로점용료 징수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
의 결	제21회
년 월 일	(93. 7. 23)

제출년월일 : 1993. 7. 6

제 안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특별운용관, 분임운용관, 분임지출원을 변경하고자 함.

○ 부천시직제규칙, 담당관 및 과규칙 개정

→ “경영수익사업지도”임무가 세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로 변경됨.

□ 주요골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관계공무원 변경

○ 기금특별운용관 : 재무국장 - 기획실장

○ 분 임 운 용 관 : 세정과장 - 기획담당관

○ 분 임 지 출 원 : 세외수입계장 - 예산계장

□ 관련근거

○ 부천시직제규칙 제4조

○ 부천시담당관 및 과규칙 제3조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특별회계운용관 : 기획실장
2. 분 임 운 용 관 : 기획담당관
3. 분 임 지 출 원 : 예산계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내지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운 영관을 둔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

1. 기금특별회계운용관 : 재무국장

2. 분임운용관 : 세정과장

3. 분임지출원 : 세외수입계장

② (생략)

제10조 내지 제12조 (생략)

1. ----- : 기획실장

2. ----- : 기획담당관

3. ----- : 예산계장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내지 제12조 (현행과 같음)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7월 6일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3년 7월 7일

라. 상정일자 : 93년 7월 21일 (제2차 총무위원회 의견)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한 일 태)

가. 제안이유

○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음

동조례는 시의회 개원전 제정 및 개정되어 시의회 의결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합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1. 4. 15일 부천시의회 개원으로 동조례 제2조 제1항(증서수여) 제4조(취소)의 “다만, 시의회가 성립된 때까지는 부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 시민증서가 수여된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바람. •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의 유공부분은? •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유공부분은 수여받음으로써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는?	• 12명임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 자매결연유공자와 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 지방자치법 제12조 1항 및 제14조 규정에 명시된 규정의 혜택을 갖을 수 있음.